

I. 첫머리에

영국은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운용해온 나라이다.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당사자의 명예 보호에 치중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는 기사나 출판물 등에 등장한 표현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Bennett, 2018; Groppo, 2016).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높은 미국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사법 절차를 남용하는 ‘명예훼손 소송 투어(libel tourism)’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Nielsen, 2015).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언론중재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14년 1월 1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중점을 둔 ‘2013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2013)’이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언론분쟁 중재처리기관인 독립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이하 IPSO)가 새롭게 출범했다. 2013 명예훼손법은 제1조에 “중대한 손해(serious harm)”라는 문구를 넣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을 과거보다 까다롭게 만들었고, 제4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표현이 공익(a matter of public interest)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했다(The Defamation Act 2013). IPSO는 언론분쟁 중재처리기관인 언론고충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이하 PC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단체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됐다.

본 글 제2장에서는 먼저 IPSO의 설립 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IPSO가 언론분

*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surisuri0@gmail.com

쟁 중재처리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 IPSO의 주요 중재 사례를 분석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짚어본다. 제3장에서는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내용인 ‘중대한 손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중대한 손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최근 소송 두 건(쿡·선 데이머러 소송,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 법이 어떻게 영국 언론의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II. 영국 언론표준기구(IPSO)

1. 영국 언론표준기구(IPSO)의 설립

2014년 9월 8일, 영국 언론분쟁처리기관인 PCC를 대체할 기관으로 IPSO가 출범했다. 지난 23년 8개월 동안 PCC는 영국 언론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PCC는 영국 주요 언론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자율규제로 언론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PCC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 부족이었다. 언론계에 재원을 의존하는 등 PCC가 독립적인 언론 규제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그 대안으로 새 규제 시스템인 IPSO가 등장했다(Middleton, 2017).

IPSO의 활동 현황에 대해 논하기 전에 IPSO의 설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IPSO의 설립은 ‘레비슨 청문회(Leveson Inquiry)’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2011~2012년 열린 레비슨 청문회에서 자율규제 기구인 PCC의 심각한 비효율성이 드러났고, 그 결과 IPSO가 PCC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레비슨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레비슨 청문회를 통해 영국 언론사인 ‘뉴스오브더월드’의 기자가 살인 사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 사서함을 해킹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영국에서는 언론의 취재 윤리와 자율규제 시스템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청문회에서 언론분쟁처리기관인 PC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그 주요 원인이 앞서 언급한 PCC의 독립성 부족이었다.

레비슨 판사는 청문회 최종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PCC는 언론 규제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그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언론 불만처리기관일 뿐이다. 독립성 부족이 문제다. PCC의 규칙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Committee)는 언론을 위한 집단이며, 이 단체는 PCC와는 분리된 기관이다. 하지만 기자윤리위원회 위원이 PCC의 재원을 담당하는 언론표준재정위원회(the 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에 의해 임명되고, 이 조직은 언론사의 임원급 기자들로 구성돼 있다. 또 언론표준재정위원회는 PCC의 예산과 위원장 임명권까지 갖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PCC는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됐으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데도 자원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¹⁾

레비슨 청문회 이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규제 기구’의 탄생이 시급해졌고, 왕실칙령(Royal Charter)을 근간으로 PCC를 대체할 새 규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IPSO가 탄생했다.

2. 영국 주요 매체들의 IPSO 가입 거부

IPSO는 영국 법에 따라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로 등록됐다. 공동체이익회사는 자산이나 이익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같은 조직을 말한다. 가입을 원하는 신문사, 온라인 매체 등은 자발적으로 IPSO에 가입해 회원계약(Scheme Membership Agreement)을 맺는다. 자발적 계약이지만 일단 회원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은 자율규제 시스템인 IPSO의 규칙을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바꿔 말하면, 과거 PCC와 달리 IPSO는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경우 회원 언론사를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엄격한 규제자(strict regulato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PSO 취임식에서 앨런 모스 의장은 “IPSO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언론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의 역할은 독립 규제 기관으로서 언론의 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고, 언론이 대중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Duffy, 2015).

1) GOV.UK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Executive summar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inquiry-into-the-culture-practices-and-ethics-of-the-press-executive-summary>

IPSO가 2015년 처음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첫해인 2014년 회원사로 가입한 언론사는 총 2,668곳으로 이중 인쇄 매체가 1,503곳, 온라인 매체는 1,165곳이었다. IPSO는 연간보고서에서 “더 선과 데일리메일, 텔레그래프, 타임즈 등을 비롯해 영국 언론사 90%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IPSO, 2015). 2017년 말 기준으로 IPSO 가입 언론사는 인쇄 매체 1,500여 곳, 온라인 매체 2,500여 곳으로 온라인 매체 회원사 숫자가 2014년보다 1,000곳 이상 증가했다(IPSO, 2017).

그러나 IPSO는 출범 초기부터 영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국의 주요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가디언(The Guardian),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옵저버(The Observer) 등이 IPSO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언론 분쟁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Duffy, 2016). 이들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뉴스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면서 뉴스 독자가 영국 국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국장이었던 리오넬 바버는 “우리 독자의 4분의 3 이상이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요 경쟁사는 글로벌 미디어이며, 그들 역시 자체적인 독립 규제 시스템으로 언론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고 영국에만 국한된 IPSO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Press Gazette, 2014). 가디언 역시 “영국 국경 안에 제한된 언론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뉴스가 글로벌 독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The Guardian, 2014).

하지만 이들이 IPSO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IPSO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출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영국 의회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Middleton, 2017). IPSO가 출범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왕실칙령(Royal Charter)이었다. 왕실칙령은 영국 의회의 동의 없이 왕실자문위원회(Privy Council)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인정받는 법이다. 이에 가디언 등 언론사들은 언론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결정 과정임에도 언론사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줄곧 불만을 표출해왔다. 또 이들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것과 거리가 먼 왕실칙령을 통해 설립된 IPSO에 가입한다면 언론의 자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The Guardian, 2014).

3. IPSO의 역할

IPSO의 핵심 역할은 IPSO에 가입한 회원 언론사들이 언론인 실천 강령(Editors' Code of Practice)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IPSO에 가입하지 않은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언론사들도 자발적으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한다. 언론인 실천 강령은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가 제정하고 수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내용을 개정하는데, IPSO를 비롯해 언론인, 일반 대중, 의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개정안을 IPSO가 수용하면 그때부터 수정된 언론인 실천 강령이 시행된다. 또 언론 취재 관행과 기술 발전, 독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실천 강령을 수정한다.

기자윤리위원회는 IPSO와 별도 조직이지만 IPSO 회장과 대표가 기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IPSO; Middleton, 2017; Duffy, 2015). 게다가 언론인 실천 강령 헌장(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에 따르면 기자윤리위원회에는 총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10명은 신문사, 잡지, 온라인 매체에 종사하는 임원급 기자들이고 이 중 5명만 언론에 종사하지 않는 독립 위원들이다. 이 때문에 기자윤리위원회가 언론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 2018).

언론인 실천 강령은 1991년 이후 30차례 넘게 개정됐고, 가장 최근 개정된 강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언론인 실천 강령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Editors' Code of Practice, 2018).

- 1) 정확성: 기사 오류 또는 오도하거나 왜곡된 내용은 신속하고 빠르게 수정해야 하며,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IPSO가 중재에 개입할 경우, 규제기관인 IPSO가 요청하는 대로 수정해야 한다.
- 2) 사생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의료 정보, 인터넷 사생활 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3) 성추행: 취재원이 원치 않으면 기자는 질문, 전화 인터뷰,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할 수 없고, 취재원이 취재 장소에서 떠나라고 할 경우 그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취재원이 요청하면 소속 매체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 4) 개인의 슬픔과 충격에 대한 보도: 보도 내용이 개인적 슬픔과 관련이 있을 경우 조의를 표하며 취재에 임해야 하며, 기사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기사가 소송 절차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
- 5) 자살 보도: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묘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6) 아동: 기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7) 아동 성범죄 사건 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언론은 16세 이하 아동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일 경우 절대 이들의 신분을 기사를 통해 노출할 수 없다.
- 8) 병원: 기자는 병원 비공개 지역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에 출입하기 전에 신분을 밝히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 범죄사건 보도: 기사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의 가족이나 친척의 신분을 그들의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
- 10) 취재 시 몰래카메라 등의 장치 사용 금지: 언론은 몰래카메라 또는 도청 장치를 이용해 취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휴대·유선 전화를 도청하거나 메시지, 이메일을 몰래 훑쳐봐서도 안 된다. 또한 디지털 정보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없다.
- 11)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도: 언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
- 12) 차별: 언론 보도 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경멸적 언급을 피해야 한다.
- 13) 금융 정보와 언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언론인은 기사 취재를 통해 알아낸 금융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 14) 기밀 정보의 보호: 언론인은 기밀 정보의 출처를 보호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 15) 범죄자와 금전 지급: 특정 범죄를 활용하거나 범죄를 미화하여 보도해서는 안 되고, 사진·정보를 얻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주변인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16) 공익: 공익보도에는 범죄 사실 보도,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오심(miscarriage of justice) 공개, 대중과 관련된 부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보도 등이 해당된다.

IPSO가 PCC와 다른 점은 스탠다드(Standards)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스탠다드 제도는 IPSO 가입 언론사가 언론인 실천 강령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으며, IPSO가 개입해 중재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IPSO는 “스탠다드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 규제기관도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다. 언론사들이 기자윤리강령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언론중재기관인 IPSO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IPSO, 2015).

IPSO는 회원사들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와 모니터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IPSO는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스탠다드 조사(Standards Investigation)를 실시한다. 만약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IPSO가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는 신문이나 해당 매체에 IPSO의 결정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대 100만 파운드(한화 14억 4,000만 원 상당) 벌금 부과, 스탠다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청구, IPSO 요구 사항 준수 여부 내용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 제출 요구, IPSO 회원 자격 박탈 등 다양한 강도의 제재가 있다.

4. 중재 절차

IPSO 언론 중재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 등 양측이 분쟁을 빠르게 합의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IPSO의 조정 및 중재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언론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가 IPSO의 개입 없이 직접 조정하는 단계와 IPSO가 개입해 중재하는 단계다. 양측이 신속한 조정에 실패하면 그때 IPSO가 해당 사건에 개입해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언론인 실천 강령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일단 IPSO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중재 사무관(Complaints Officer)에게 배정되며, 중재 사무관은 해당 기사의 언론인 실천 강령 위반 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만약 기사에 어떠한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으면 중재 신청을 기각하고 중재 신청자에게 기각된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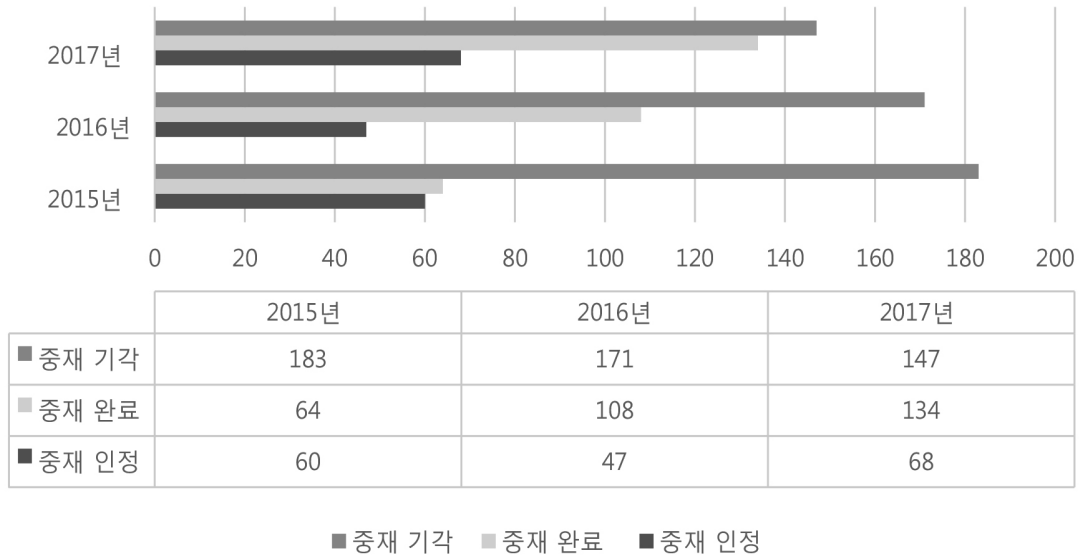
또 중재 신청자가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먼저 접촉하지 않고 IPSO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는 IPSO가 언론사에 연락해 직접 합의를 하도록 장려한다. IPSO는 “중재 신청자와 언론사간 직접 협상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IPSO가 개입하는 것보다 더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고, 배상 과정도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이 28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에는 IPSO가 중재에 개입한다(IPSO, 2015).

5. IPSO 2015~2017년 언론 조정·중재 신청 통계

IPSO에 접수된 조정·중재 사건을 다루는 곳은 언론분쟁위원회(IPSO Complaints Committee)다. 언론분쟁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과 5명의 업계 대표(언론인 출신)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언론분쟁위원회의 역할은 기자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IPSO 회원사의 보도에 대한 불만을 중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기사 수정 요구 결정 등을 내린다(IPSO, 2015).

2015년 한 해 동안 IPSO에 접수된 언론조정·중재신청 건수는 총 12,278건으로 이중 IPSO가 개입해 중재한 분쟁은 총 307건이었다. 가입 언론사 숫자가 늘면서 매년 IPSO에 접수되는 언론조정·중재신청 건수도 급격하게 늘었다. 2016년에는 전년도보다 17.7% 포인트 증가한 수치인 14,455건이 접수됐고, 2017년에는 20,903건으로 2016년보다 44.6%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림 1] IPSO가 개입한 언론 중재 사건 연도별 통계



출처: IPSO 연간 보고서 (IPSO Annual Report), 2015; 2016; 2017.

[그림 1]은 지난 3년간 IPSO가 발행한 연간보고서를 분석해 도출한 IPSO 개입 중재 사건의 연도별 통계다. ‘중재 인정’은 IPSO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언론사에 사과문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고, ‘중재 완료’는 IPSO가 중재에 직접 개입해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이 합의하도록 이끈 것이다. ‘중재 기각’은 피해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지난 3년간 전체 언론 중재 신청 건 중 인정된 비율은 약 17.7%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전체 307건 중 19.5%(60건)가 인정됐고, 2016년엔 326건 중 14.4%(47건), 2017년은 19.4%(68건)가 인정됐다.

6. 2017년 IPSO의 주요 중재 사례

(1) 사생활 침해 사례

2017년 IPSO는 공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보도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행사가 아닐 경우 공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17년 5월, 영국 해리 왕자는 메일 온라인(Mail Online)이 자신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여 수영복 차림으

로 개인 소유의 해변에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했다며 IPSO에 중재 요청을 했다. 메일 온라인은 “해리 왕자의 사진을 찍은 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해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IPSO 중재위원회는 해리 왕자가 개인 소유의 해변에서 사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이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사생활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언론의 사진 보도는 용납될 수 없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인 행동 강령(Editor’s Code) 제2조 ‘사생활’ 규정에 따라 불만이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고, 메일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있다가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2017년 7월, 홀리 헌터라는 여성은 영국 언론사 더 선(The Sun)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는 바람에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사건 중재를 요청했다. 홀리는 더 선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더 선은 “당시 홀리가 있었던 영국 브라이턴의 해변은 개인 소유의 해변이 아니며,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공공 해변이었다”며 해당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여름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영국 언론의 전통적인 취재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PSO 중재위원회는 홀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부분은 기각했다. 위원회는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공공장소였고, 중재 신청 당사자 역시 공공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때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재 신청을 기각했다. 해리 왕자 수영복 사건은 언론인 윤리 강령 제2조 사생활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반면, 홀리 사건은 정황적 증거를 볼 때 언론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2] 2017년 7월, 더 선(The Sun)이 영국 브라이턴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도한 사진



출처: 더 선(The Sun), 2017.²⁾

(2)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 노출 사례

성폭행 사건 보도 시 언론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잘못이라는 중재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한 남성이 성폭행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파이슬리 데일리 익스프레스(Paisley Daily Express), 가제트 파이슬리(The Gazette Paisley), 이브닝 타임즈(The Evening Times)가 사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이 남성은 중재 신청 이유로 기사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족의 반응, 피해자 나이, 사건이 미친 영향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

2) Sandeman, G. (2017, 7, 16). TEMPERATURES SOAR Blighty can expect a 'perfect summer's day' as Brits gear up to bask in hot temperatures for the next three months. <The Sun>. <https://www.thesun.co.uk/news/4030139/brits-to-bask-in-hot-temperatures-for-the-next-three-months-with-mercury-rising-as-high-as-36c/>

았다. 또한 성폭행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한 것도 언론이 보도 윤리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일부러 뺐고, 기사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PSO 중재위원회는 “언론은 사회적 정의 추구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성폭행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은 보도를 자제해야 하며, 언론이 공개한 정보가 조각조각 맞춰져 피해자를 추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언론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들에 “중재 결과를 지면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7. IPSO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

IPSO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지만 자율규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IPSO가 독립성 부족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사라졌던 PCC의 출범 당시 모습과 비슷해 PCC와 비슷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1991년 1월 활동을 개시한 PCC도 IPSO처럼 이전에 존재했던 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출범했다. PCC는 인쇄 매체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1990년 6월 언론위원회(Press Council)를 대체할 기관으로 설립됐고, 이후 PCC는 ‘빠르고, 자유롭고, 공정하게(fast, free and fair)’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용자 친화적인 언론 분쟁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Middleton, 2017).

IPSO의 독립성 부족에 대해 제기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PCC가 그랬던 것처럼 IPSO 역시 규제 대상인 회원 언론사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IPSO가 회원 언론사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IPSO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규제자금 조달회사(The Regulatory Funding Company, 이하 RFC)라는 조직이 언론사들에 지원금을 받은 뒤 IPSO의 재원을 조달한다(Middleton, 2017; IPSO, 2018). IPSO는 운영비와 관련하여 “규제 대상인 언론

사와 직접 협상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RFC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운영비를 회원 언론사들의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언론규제기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IPSO 이사회 위원에 전직 언론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도 IPSO의 독립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IPSO의 이사회는 전 항소법원 판사였던 앨런 모스 의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장을 포함한 7명은 언론계에 몸담지 않은 일반 위원이며, 나머지 5명은 규제 대상인 언론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전직 언론인들이 업계 대표(industry representatives)로 선정돼 이사회에 참여한다. IPSO는 언론인 출신 위원 비율을 비언론인 출신 위원보다 줄여 이사회에서 언론 편향적인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언론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해 앨런 모스 의장 역시 2016년 2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예전 시스템(PCC)보다는 훨씬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며 IPSO의 태생적 한계를 시인했다(The Guardian, 2016).

셋째, IPSO의 근간인 언론인 윤리 강령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의장도 언론인 출신이다. 현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인 네일 밴슨은 2017년 7월 의장으로 임명될 당시 영국 미디어 그룹인 트리니티 미러(Trinity Mirror)의 편집장이었다. 밴슨 의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데일리 메일(Daily Mail) 편집국장 출신인 폴 다크러가 2008년부터 9년간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2008년 폴 다크러가 의장으로 지명되자 일부 언론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PCC 회원사인 데일리 메일 편집국장 출신인 폴 다크러가 언론인 윤리 강령을 만드는 기자윤리위원회 의장을 맡는 것은 객관성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IPSO가 PCC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이라고 해도 여전히 회원 언론사의 압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III. 영국 2013 명예훼손법과 주요 판례

1. 2013 명예훼손법과 ‘중대한 손해(serious harm)’

영국의 명예훼손법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당사자의 명예 보호를 중시했던 영국이 2013 명예훼손법(The Defamation Act 2013)을 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은 제1조, ‘중대한 손해(serious harm)’에 대한 부분이다.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증했을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2013년 명예훼손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The Defamation Act 2013).³⁾

- (1) 진술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영리를 추구하는 누군가의 명예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중대한 손해가 아니다.

법 개정 전에는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가 어떤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Groppo, 2016).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원고가 재정적 손실이나 재정적 손실 가능성을 포함한 중대한 손해를 증명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되므로 개정 이전보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제1조와 함께 제4조도 당사자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조항으로 해석된다. 명예훼손법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에 따르면 피고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익과 관련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사건의 그러한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영국 의회는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인 이 법안의 개정 목적을 “표현의 자유와 당사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Parliament UK,

3) 2013 명예훼손법 전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contents/enacted>

2013)⁴). 즉, 의회의 법안 개정 취지로 미뤄보면 영국 의회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의 문턱을 높이고(제1조), 공익 보도를 한 언론사의 면책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을 삽입해(제4조) 무분별한 소송으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이해 당사자인 영국 언론은 “표현의 자유 보호 가능성을 높인 법”, “명예훼손 소송 투어(libel tourism)⁵는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등 명예훼손법 개정안 시행을 환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BBC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언론인과 과학자, 연구자들은 과거에 기업이나 개인 등을 공정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불공정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3 명예훼손법이 시행되면 정당한 비판과 토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법을 해석했다(BBC, 2013). 가디언도 당시 영국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당사자의 명예 보호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The Guardian, 2013).

영국은 ‘명예훼손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명예훼손법을 시행해왔다. 닐슨(Nielsen, 2015)은 ‘명예훼손 소송 투어, 영국과 유럽연합 국제사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영국 명예훼손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269쪽)이라고 꼬집었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전에는 원고는 기사나 출판물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 닐슨은 또 영국 법적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력이 있는 원고가 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력가, 경제력을 갖춘 유명인들이 승소하기 위해 영국에 와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명예훼손 소송 투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270쪽)이라고 비판했다.

부호인 원고가 영국의 명예훼손법을 남용한 사례로 종종 거론되는 것이 미국 작가 레이첼 에른펠드(Rachel Ehrenfeld) 사건이다. 에른펠드는 ‘악마에게 자금 대기: 테러에 자금을 대는 방법과 이를 막는 법(Funding Evil: How Terrorism Is Financed and

4) 영국 의회 홈페이지에서 2013 명예훼손법의 주요 내용 요약본을 볼 수 있다.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2-13/defamation.html>

5) 다른 나라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영국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Nielsen, 2015).

How to Stop It)이라는 책을 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재력가가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 책에 거론된 재력가가 미국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곳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에른펠드의 책은 영국에서 단 23부만이 판매됐으나, 이 재력가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 법원은 에른펠드의 책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만 파운드와 소송비용 8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에서는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자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위협한다며 비판 여론이 끊어올랐다(박아란, 2015).

2. 주요 판례: 쿡·선데이미러 소송 & 라쇼·인디펜던트 소송(Cooke v MGN & Lachaux v Independent Print Ltd)

본 글은 제4조 ‘공익 사항에 대한 공표’와 관련된 영국 법원의 판례가 부족하고,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쟁점이 제1조인 점을 고려해 중대한 손해에 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3 명예훼손법 시행 후 중대한 손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주요 소송이 두 건 있다. 첫 번째 소송은 영국에서 ‘Cooke v MGN’으로 알려진 주택 임대업자 쿡과 영국 신문사 선데이미러(Sunday Mirror) 간 발생한 소송(이하 쿡·선데이미러 소송)이다. 2014년 8월 13일 고등법원⁶⁾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영국의 주택임대연합인 미드랜드 하트(Midland Heart)의 대표였던 원고 쿡 씨가 2014년 1월 선데이미러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것을 일컫는다. 고등법원(High Court) 판결로 종결된 이 소송은 영국에서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중대한 손해에 대한 지침을 내린 첫 판례로 종종 거론된다. 사건을 담당한 빈 판사는 예심⁷⁾에서 “중대한 손해는 과거 명예훼손법보다 손해의 정도를 더 높인 것으로서, 상당한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를 입증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6)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은 2심인 항소심을 다루는 법원을 뜻하지만,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사법 제도에서 고등법원은 1심을 담당한다. 즉, 민사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이 1심을 맡고, 2심은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상고심은 대법원(The Supreme Court)이 담당한다.

7) 예심(preliminary issue)은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재량권을 발휘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에 의한 중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예심에서 분쟁이 해결될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소송은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으로 2018년 11월 기준으로 현재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⁸⁾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13년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기 때문이다.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예심에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지만,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아직도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두 소송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영국 법원에서 어떻게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 규정인 중대한 손해를 해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쿡·선데이미러 소송

1) 사건 개요

주택 임대업자이자 주택임대업체 미드랜드 하트의 대표인 원고 쿡은 2014년 1월 26일자 선데이미러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데이미러는 1면과 4면, 5면 전면을 할애해 “보수층 억만장자들, 베네피츠 스트리트에서 떼돈을 벌다 (MILLIONAIRE TORY CASHES IN ON TV BENEFITS STREET)”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 제목에 등장한 베네피츠 스트리트는 방송에 등장했던 영국 버밍엄 시의 제임스 터너가(James Turner Street)를 의미한다.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영국 방송사 채널 4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베네피츠 스트리트(Benefits Street)’는 제임스 터너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사는 저소득층의 삶과 이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건물주들에 대해 보도했으며, 방영 이후 영국 전역에 정부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토론이 일어났다.

3면에 걸친 기사가 원고인 쿡과 미드랜드 하트를 겨냥해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선데이미러가 중점 보도한 인물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제임스 터너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임대업자 폴 니스칼이었다. 선데이미러는 니스칼이 “수리 상태가 열악하고, 곰팡이가 핀 방을 주당 215파운드(한화 약 32만 원)를 받고 임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그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부도덕하게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8)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11월 13~14일에 걸쳐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원고 쿡과 미드랜드 하트가 문제 삼은 부분은 5면에 등장한 기사의 두 문장이었다. 선데이미러는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인용, “채널 4에서 저소득층, 약탈자로 묘사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세 채가 미드랜드 하트 주택 연합의 소유다. 그리고 이 단체 대표인 쿡 씨는 매년 17만 9천 파운드(한화 약 2억 6천 300만 원)를 벌고, 글로스터셔에 있는 대저택에서 산다”라고 보도했다. 쿡과 주택임대연합 미드랜드 하트가 위 문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데이미러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⁹⁾

2) ‘중대한 손해’ 증명하지 못하면 명예훼손 불성립 판결 나와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고등법원 예심에서 선데이미러의 신문 2면에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끝이 났다. 빈 판사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명예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는 판결문에서 “사과문은 합리적인 독자들이 원고에 대한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기에 충분한 조치다. 또 이 사과문은 인터넷 상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빈 판사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특정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중대한 손해를 추론할 수 없다. 또한 미래에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의 ‘중대한 손해’ 삽입으로 인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예전보다 엄격해졌음을 증명하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이다(Bennett, 2018; Groppo, 2016).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손해가 상당한 손해보다 손해의 기준을 더 높인 것이 명확하다”며 “(2013 명예훼손법은) 손해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원고는 과거보다 높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법 개정 직후 언론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해석 보도가 쏟아져 나왔지만, 영국 법원이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반영하는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빈 판사의 이번 판결로 인해 2013 명예훼손법의 ‘중대한 손해’가 과거보다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인 것이 증명됐다.

9) 이 소송의 1심 법원 판결문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5rb.com/wp-content/uploads/2014/08/1-Cooke-2-Midland-Heart-Ltd-v-1-MGN-Ltd-2-Trinity-Mirror-Midlands-Ltd.pdf>

이 판결은 의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 명예훼손법 초안(The draft Defamation Bill)에는 원래 원고의 명예에 상당한 손해(substantial harm)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¹⁰⁾ 그러나 법안을 심사한 국회 합동위원회는 초안에 있었던 “상당한 손해(substantial harm)”를 더 높은 수준의 손해를 의미하는 “심각하고 상당한 손해(serious and substantial harm)”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초안을 수정해 “중대한 손해(serious harm)”를 삽입했고, 수정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상당한 손해”를 삭제하고 “중대한 손해”로 문구를 바꾼 것은 양측 당사자 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¹¹⁾

3) 판결의 의미와 비판

쿱·선데이미러 소송은 중대한 손해에 대한 정의를 내린 첫 판례였지만, 이 판결 이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보통법과 2013 명예훼손법에서 각각 정의하는 명예훼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쿱·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의 ‘중대한 손해’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원고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중대한 손해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Groppo, 2016). 또한, 빈 판사는 ‘중대한 손해’는 ‘상당한 손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중대한 손해가 상당한 손해보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해 법리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10) 2013 명예훼손법 초안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11) 영국 법무부가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joint-committees/Draft-Defamation-Bill/Government%20Response%20CM%208295.pdf>

(2) 라쇼·인디펜던트 소송

영국에서 ‘Lachaux v Independent Print Ltd’로 알려진 이 소송은 프랑스인인 브루노 라쇼가 영국 신문사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이브닝 스탠다드(The Evening Standard),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하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을 일컫는다. 이 소송은 쿡·선데이미러 소송만큼이나 중요한 판례로 거론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2013년 명예훼손법이 시행된 뒤 진행된 소송 중 처음으로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난 소송이다. 둘째, 이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재판 결과와 별개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서 2013 명예훼손법의 핵심인 제1조의 ‘중대한 손해’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놔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Bennett, 2018; Groppo, 2016). 고등법원에서는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과 비슷하게 “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예전보다 더 높은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추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개요

프랑스 국적의 원고 브루노 라쇼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하는 항공우주 공학자였다. 그는 인디펜던트지 등 영국 언론사 3곳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소송 근거로 삼은 것은 자신에게 가정폭력범 혐의를 제기한 2014년 1~2월의 기사 5개였다. 인디펜던트지 등 언론사 3곳은 “원고가 영국인 국적의 전처를 폭행해 전처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으며, 이후 그가 부당한 방식으로 아들을 빼앗아 온 뒤 아들 납치 혐의를 씌우는 바람에 전처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유괴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쿡·선데이미러 소송은 기사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두 문장에 불과할 만큼 사안이 가벼웠지만,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대상이 된 기사 5건 모두 원고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표 1〉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원고 라쇼가 소송을 건 기사 5건

기사 게재일	언론사	기사 제목
2014년 1월 20일	허핑턴 포스트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인 영국 여성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2014년 1월 24일	인디펜던트 온라인판	“영국 여성 아프사나 라쇼, 아들을 유괴했다는 남편의 주장으로 두바이에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다”
2014년 1월 25일	인디펜던트 지면	“영국인 여성 아프사나 라쇼, 아들을 유괴했다는 남편의 주장으로 두바이에서 수감 위기”
2014년 2월 10일	이브닝스탠다드(온라인/지면)	“두바이는 작은 도시, 전 남편이 내 아들 즉시 데려가”

출처: 영국 고등법원, 2015.

2) 고등법원 판결: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처럼 ‘중대한 손해’ 증명해야

하지만 고등법원(High Court)은 원고 라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중대한 손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을 담당 한 와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¹²⁾

“원고의 주장과 반대로,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중대한 손해)에 따르면 해당 기사가 다른 사람들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에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에 어떤 중대한 손해를 야기했는지, 아니면 그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거나 미래에 끼칠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와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은 중대한 손해가 야기되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증명될 때만 가능하다”며 중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소한 사건은 앞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시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판결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손해를 추정만 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남겼다. 둘째,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원고가 피해나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원인

12) 이 소송의 1심 법원 판결문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udiciary.uk/judgments/lachaux-v-independent-print-ltd-evening-standard-ltd-and-aol-uk-ltd-final/>

(cause of action)이 발생하지만, 이 판결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해졌다. 과거엔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원고가 기사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었으나, 이 판결에 따르면 외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Bennett, 2018). 원고 입장에서 소송 전부터 기사나 출판물이 자신의 명예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아진 셈이다. 즉, 와비 판사 역시 쿡·선데이미러 소송 판결처럼 명예훼손 기준을 높여 무분별한 소송으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국회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 것이다.

3) 항소법원 판결: 중대한 손해 증명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성립할 수 있어

항소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5개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긴 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이 고등법원 판결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등법원에서는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반영해 중대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다비 판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 추정(the presumption of damage)은 기사나 출판물이 어떻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느냐가 핵심이다. 이 단계에서 지속적이거나 결과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다.”¹³⁾

고등법원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에 대해 외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추론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다비 판사는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추론하는 것으로도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제1조 ‘중대한 손해’를 삽입한 이유가 명예훼손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1조의 의도는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높임으로써 사소한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비 판사는 국회의

13) 이 소송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http://www.5rb.com/wp-content/uploads/2017/09/Lachaux-Section1.pdf>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사용된 문구가 개정 의도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고 내다 봤다.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is likely to)’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를 야기할 경향(tendency to cause)과 발생할 가능성(a likelihood of causing)이라는 두 문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원고가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4)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법안 개정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판례를 증시하는 영국에서 혼란을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가 2013 명예훼손법을 발의한 것은 ‘상당한 손해’를 더 높은 수준의 ‘중대한 손해’로 기준을 높여 사소한 손해로 사법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베넷(Bennett, 2018; 15쪽)은 ‘2013년 명예훼손법 제1조를 근거로 본 라쇼 사건과 중대한 손해의 하한 요건’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은 의회가 2013 명예훼손법 제1조를 삽입한 의도와 상반되는 해석을 제공했고,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항소법원이 ‘문제 있는 지침(problematic guidance)’을 내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3 명예훼손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소송은 원고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은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첫 사례로, 대법원 판례가 중대한 손해의 의미를 정의하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대한 손해 기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

제1조 중대한 손해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도 모호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의회가 2013 명예훼손법을 개정한 취지다. 국회가 제1조에 중대한 손해를 삽입한 것은

원고가 사소한 내용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영국에서 ‘명예훼손 소송 투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쿱·선데이미러 소송,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판결로 중대한 손해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는 했으나, 법원에서는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는가를 두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했다. 라쇼·인디펜던트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도 만약 대법원에서 ‘실질적 손해를 입증할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앞으로 원고가 사소한 기사 내용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5년째인 지금 2013 명예훼손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영국 온라인 언론 프레스 가제트(Press Gazette)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조사 자료를 인용, 2017년(6월 말 기준) 영국에서 재판이 이뤄진 명예훼손 소송은 총 49건으로, 3년 전에 86건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7년 전체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피고가 신문사인 비율은 22%로,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스 가제트는 기사를 통해 “2013 명예훼손법이 명예훼손 성립 기준을 ‘상당한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Press Gazette, 2018).

IV. 끝머리에

본 글은 영국의 언론분쟁처리기관인 IPSO의 운영 및 활동 내용과 2013 명예훼손법 시행 이후 주요 판례를 분석해 명예훼손법 개정이 영국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명예훼손법이 시행되고, 그해 9월 IPSO가 출범하는 등 2014년은 영국 언론 환경에 여러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기였다.

출범 5년째를 맞이하는 IPSO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직 이르지만, 언론 규제 방식 측면에서 자율규제의 틀을 깨지 못한 IPSO는 독립성 부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IPSO는 규정을 위반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스탠다드 조사(Standards Investigation)와 벌금 부과, 회원 자격 박탈 등 다양한 처벌 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나, 운영비를 회원 언론사들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자율규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2013 명예훼손법은 영국 언론의 자유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임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법의 원칙을 따라온 영국은 미국과 달리 당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쪽으로 명예훼손법이 발전해왔다. 이 때문에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영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증대한 손해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지금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Groppo, 2016), 앞으로 더 많은 명예훼손 판례가 축적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안을 근거로 영국은 당사자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박아란 (2015). <미디어와 명예훼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BC (2013, 12, 31). Defamation Act 2013 aims to improve libel laws. <BBC>. Available from: <https://www.bbc.co.uk/news/uk-25551640>
- Bennett, T. D. (2018). Why so serious? Lachaux and the threshold of ‘serious harm’ in section 1 Defamation Act 2013. *Journal of Media Law*, 10(1), 1-16.
- Defamation Act 2013 [online] The National Archives (2013). Available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3/26/contents/enacted>
- Duffy, N. (2015). IPSO one year on. *Journal of Media Law*, 7(2), 116-129.
-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2018). The Code In Full. Available from: http://www.editorscode.org.uk/the_code.php
-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2018).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Constitution [online]. London: Editors’ Code of Practice Committee. Available from: <https://www.editorscode.org.uk/downloads/minutes/Editors-CC-Constitution-2018.pdf>
- Greenslade, R. (2014, 9, 4). Why the Guardian’s decision not to sign up to Ipsos makes sense.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greenslade/2014/sep/04/press-regulation-ipsos>
- Groppo, M. (2016). Serious harm: A case law retrospective and early assessment. *Journal of Media Law*, 8(1), 1-16.
- IPSO (2015). Annual Report 2015.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300/ipso-ar.pdf>
- IPSO (2016). Annual Report 2016.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462/ar_2016_.pdf
- IPSO (2017). Annual Report 2017. Available from: https://www.ipso.co.uk/media/1569/ipso_annual_report_2017e.pdf
- Martinson, J. (2016, 2, 14). Ipsos chair: ‘We’re much, much better than nothing’.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feb/14/ipso-chair-alan-moses-regulation-press>

- Mayhew, F. (2018, 4, 23). Higher threshold of harm has seen number of UK defamation cases drop as celebs look to privacy actions to fight libel. <Press Gazette>.
Available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higher-defamation-threshold-has-seen-number-of-uk-cases-drop-as-celebs-look-to-privacy-actions-to-fight-libel/>
- MIDDLETON, J. (2017). BRITAIN'S CHANGING MEDIA ACCOUNTABILITY SYSTEMS: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 *Hitotsubashi journal of law and politics*, 45, 1-12.
- Ministry of Justice (2012).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online]. London: Ministry of Justice Available from: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joint-committees/Draft-Defamation-Bill/Government%20Response%20CM%208295.pdf>
- Nielsen, P. A. (2013). Libel Tourism: English and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9(2), 269-288.
- Press Gazette (2014, 4, 17). Financial Times opts out of IPSO regulator in favour of its own system. <Press Gazette>. Available from: <https://www.pressgazette.co.uk/financial-times-opts-out-ipso-favour-its-own-system-regulation/>
- The Guardian (2013, 12, 31). Libel: new Defamation Act will reverse 'chilling effect', ministers claim.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law/2013/dec/31/trivial-libel-claims-targeted-new-law>
- The Stationery Office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report [Leveson] Volume 4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40122145023/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hc1213/hc07/0780/0780_iv.asp
- The Stationery Office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EXECUTIVE SUMMARY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9039/0779.pdf

The Stationery Office (2011). Joint Committee on the Draft Defamation Bill [online].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SO) Available from: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jt201012/jtselect/jtdefam/203/203.pdf>

Tonybee, P. (2015, 9, 10). The press regulator Ipso is a year old - and it's a total failure. <The Guardian>. Available from: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5/sep/10/press-regulator-ipso-pcc-rupert-murdoch>

UK Parliament (2013). Defamation Act 2013.

Available from: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2-13/defamation.html>